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단방치 자전거 범위 확대 등〉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05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03. 11.
3. 회 부 일 : 2025. 0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공장소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곳에 한정되어 있고, 방치 외에 통행 방해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하여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방치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방치자전거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를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범위와 방치자전거 처분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방치자
전거 처분을 활성화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
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자전거의 무단방치 행위의 정의에서 통행방해 요건을 삭제하고, 자전거의 방치가 금지되는 공공장소의 범위와 방치자전거의 처분절차·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 ----- <u>조례로 정하는 장소</u> ----- ----- <u>방치하여서는</u> -----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 ----- ----- <u>조례</u> <u>로</u> -----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간 무단방치 자전거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교

통안전을 저해하고 있음.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가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이 없는 구역(별도 관리자가 있는 국도, 상가, 공개공지, 국립공원, 사유지 등)에 방치된 자전거는 처분이 곤란하며,

장기간 도로변에 방치된 자전거와 같이 ‘통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렵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민원제기 사례도 발생하는 등 방치자전거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¹⁾.

이에 개정안은 무단방치 금지 장소를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해석이 모호한 ‘통행방해’ 규정은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치된 자전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장소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

1)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건의(2016년,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설문조사), 행정안전부
☞ 사유지 등 방치자전거 정비, 통행 방해 개념 명확화, 절차 간소화, 처리비용 부과 등

리 권한이 없는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공공장소’를 ‘그 밖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 대체하기 보다는 ‘공공장소’는 유지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규정은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무단방치 자전거의 의미를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는데²⁾, 개정안과 같이 필요한 처분을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금지되는 자전거 무단방치 행위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방치자전거의 요건에서 ‘통행방해’를 삭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자전거 방치 금지 장소 개정과 관련하여 공공장소는 유지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방치자전거의 처분방법과 관련하여 방치자전거의 처리기간 및 처분절차는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별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 ⑤ (생략)

로 방치자전거의 처리를 상이하게 운영할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

참고

방치자전거 수거 현황

(단위 : 대)

시·도	방치자전거 수거 현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262,954	27,571	33,731	32,508	34,609	34,288	35,211	31,695	33,341
서울	129,392	16,419	16,181	17,255	17,911	16,763	15,224	15,546	14,093
부산	8,850	648	1,170	834	1,111	1,006	1,517	821	1,743
대구	5,837	536	678	694	1,068	733	697	631	800
인천	10,572	886	1,567	1,693	1,638	1,310	1,144	944	1,390
광주	1,324	376	7	43	107	151	153	69	418
대전	2,721	28	564	472	338	244	311	594	170
울산	1,468	129	417	54	86	113	237	281	151
세종	2,130	157	133	151	106	314	282	578	409
경기	58,863	4,919	6,402	5,839	7,433	8,196	8,767	7,947	9,360
강원	4,229	295	1069	1114	401	435	400	295	220
충북	1,522	189	162	168	131	197	261	171	243
충남	2,128	136	73	346	157	418	347	195	456
전북	3,047	222	425	388	307	323	351	481	550
전남	869	63	54	31	110	161	240	113	97
경북	5,313	1,230	1,181	354	572	542	494	392	548
경남	17,358	596	3,122	2,172	2,295	2,354	3,240	1,624	1,955
제주	7,331	742	526	900	838	1,028	1,546	1,013	738

※ 자료: 행정안전부